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32271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청구권]

전 문

원 고 A종교단체 B교회

피 고 1. C

2. D종교단체E교회

변 론 종결 2015. 8. 12.

판결 선고 2015. 9.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 2, 3, 5, 6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은평등기소 2013. 10. 31. 접수 제56724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3. 5. 28. 접수 제27917호로 마친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종교단체E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10. 14. 접수 제52975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별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위등기소 2015. 1. 6. 접수 제67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3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교회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A총회(F교단) 산하 G노회 소속이었다가 2013.4. 15. G노회가 H노회와 I노회로 분리된 이후 2014. 8. 30. I노회 소속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I노회는 9. 12. J를 원고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원고 교회는 9. 28. 공동의회에서 J를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 C은 2008. 3. 16. '3년 후 신임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한다'는 3년임기 조건으로 원고 교회의 임시목사로 청빙되었는데, G노회가 2011. 8. 30. 피고 C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K 목사를 원고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고, 원고 교회가 10.2. 세례교인 127명이 참석한 공동의회에서 피고 C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으며, 이어 G노회가 10. 21. 권징재판에 따라 피고 C의 직무를 정지하여 면직출교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교회의 임시목사로서의 지위는 물론 목회자 자격도 상실하여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도 없이 2013. 5. 28. 이 사건 4부동산에 관하여, 10. 31.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각 대표자 명의를 K, L에서 위 피고 명의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치는 한편, 2014. 10. 14.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6.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각 소유자명칭을 원고에서 피고 교회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이하 위각 변경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 한다).

라. 이와 같이 피고 C은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닐뿐더러, 원고 교회 교인전원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인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경우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 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16, 을 1-1 내지 3-3, 을 5-1~2, 을 6, 7, 을9-1~2, 을 12-1~3, 을 14-1~5, 을 17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있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결국 같은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원고 교회의 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갑 16(B교회 공동의회 회의록)을 보면 ' 2014. 11. 23.14:00 M독서실 4층에서 재적 31명 중 23명이 참석하여 교인총회도 없이 불법으로 교단을 탈퇴한 C씨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고소에 대한 변호사 선임 안건에 대하여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 원고 교회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주장대로 피고 C이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다거나 불신임결의 내지 권징재판으로 임시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일련의 분쟁 과정(서울고등법원 2012나88695 출입금지 등 사건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1418 절도 사건 판결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 C이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J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적법함에 의문이 있다.

3) 피고 C은 원고 교회의 명칭을 피고 교회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원고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종전 소속 노회를 탈퇴하고 D종교단체에 가입함에 따른 것일 뿐, 담임목사나 기존 교인[위 2)항 기재 분쟁에 따라 원고 교회에서 사실상 탈퇴한 교인은 제외함], 예배 장소 등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위 두 교회는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 경우 'D종교단체E교회'에서 'A종교단체B교회'로 등기명의인의 회귀를 구하는 부분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표시변경에 불과하므로 원고로 서는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족할 뿐 소로써 이를 구할 이익도 없다.

4) 설령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 즉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 개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철, 판사 최지경, 판사 유현식

별지

목 록

1. 서울 은평구
2. 서울 은평구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교회
1층 167.88㎡
2층 167.88㎡
3층 167.88㎡
4층 136.20㎡
5층 113.75㎡
지층 270.45㎡
3. 서울 은평구
4. 서울 은평구
5. 서울 은평구
6. 서울 은평구 외 2필지 지상
연와조 경량판넬경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
1층 42㎡
2층 42㎡. 끝.

